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근거 마련〉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1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 수립·시행	3
2. 국방중소·벤처기업 선정,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신설	8
3.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11
※ 참고자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의안번호 제2201864호,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중) 신·구조문 대비표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8. 7.
3. 회부연월일: 2024.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 수립·시행

-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자금지원, 기술혁신 지원,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국내외 공급망 진입 지원 등을 추가하고, 동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u>성장지원</u>)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u>성장 및 기술혁신 등의 지원</u>) ① ----- ----- -- <u>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지원</u> 을 위하여 <u>필요한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추진할 수 있다.</u>	② ----- ----- <u>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u> ----- <u>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에 따라</u> ----- <u>추진</u> <u>하여야 한다.</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3.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설>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신설>	5.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신설>	6. 정보화 지원
<신설>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신설>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신설>	9.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공급망 진입 지원
3. (생략)	10.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 기----- -----사업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법령에서는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도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라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¹⁾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지원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동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비교]

현 행	개 정 안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4.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4.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경영·행정·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6. 정보화 지원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8.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9.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공급망 진입 지원 10.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 11.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22년 3월 산업연구원과 방위산업진흥회에서 공동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달하여 대기업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업 편중현상의 주요 원인을 대기업(체계업체) 위주의 생산구조,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도, 제한된 기간 내 완성도 높은 부품개발의 어려움 누적,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방위산업에서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비중(2020년 실적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방산업체		일반업체	합계
		체계업체	방산협력업체		
업체 수		17 (3.7%)	69 (15.0%)	374 (81.3%)	460 (100.0%)
실태 현황	종사자 수	25,417 (57.5%)	7,727 (17.5%)	11,073 (25.0%)	44,217 (100.0%)
	방산매출액	129,212 (71.9%)	24,305 (13.5%)	26,111 (14.5%)	179,628 (100.0%)
	방산수출액	16,022 (87.2%)	2,128 (11.6%)	232 (1.3%)	18,382 (100.0%)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1 방위산업 실태조사」, 2022.3, p.7

또한 이보다 앞선 2019년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친화형 방위 산업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보고서²⁾에 따르면,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서 2.67로 보통(3)을 하회하여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 방위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의존성,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정도, 자금 원천의 다양성 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장원준·정만태·양현봉·송재필·고홍석·이경숙, 중소기업 친화형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산업연구원(2019), 170페이지 이하 참조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안 제10조 제2항 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이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중이므로 그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⁴⁾

2. 국방중소·벤처기업 선정,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신설

□ 개정안은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안 제10조제3항),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3) 2024년 7월 17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64호). 참고자료 첨부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개정안 중 제10조제2항제9호에 신설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공급망 진입 지원 사업’의 반영 여부만 심사하면 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기업에 직접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18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동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력 활용과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력 및 재원 조달이 어려운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안전부는 안 제10조제4항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단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개별 법률에서 설치토록 규정할 경우, 기존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통합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반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함.

□ 참고로 이 개정안의 내용도 앞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⁶⁾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2024년 7월 17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64호)

3.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학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 개정안의 내용도 앞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⁷⁾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12

7) 2024년 7월 17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64호)

※참고자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의안 번호 제2201864호,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중)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u>성장지원</u>)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u>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지원을 위하여</u>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생략) 4.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u>성장지원을 위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항</u>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u>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u>) ① ----- ----- <u>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이라 한다)</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u>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u>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u>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u> 4. <u>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u> 5. <u>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u> 6. <u>정보화 지원</u> 7. <u>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u> 8. <u>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u> 9. (현행 제3호와 같음) 10. ----- <u>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u> ----- ----- <u>사업</u>

현행	개정안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